

문서번호	조사담당관-1348			
결재일자	2017. 1. 18.	시 민		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조사관	조사1팀장	조사담당관
방침번호				감사위원장

I·SEOUL·U

##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

2017. 1.

**감 사 위 원 회**  
( 조 사 담 당 관 )

## 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‘■’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시 민 참 여	●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청책토론회, 설문조사, 시민공모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전 문 가 자 문	●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예) 자문위원회 개최, 타당성 검토, T/F 운영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갈 등	●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,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사 회 적 배 려	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여성, 아동, 장애인, 한부모 가정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일 자 리	●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직·간접 채용, 취업알선, 전문인력양성, 창업지원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선 거 법	●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홍보물 배포, 표창수여, 경품지급, 기부행위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안 전	●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장소·시설물 점검,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타 기 관	● 타 기관 협의·협력(타 자원 활용 등)을 하였습니까? 예) 중앙부처, 타 지자체, 투자·출연기관, 민간단체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홍 보	●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보도자료, 기자 설명회, 현장 설명회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정 책 영 문 화	●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영문 제목·요약, 해외 언론 보도, 외국어 홈페이지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바 른 우 리 말	●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? 예) 별첨, 첨부 ⇒ 붙임, 가이드라인 ⇒ 지침 등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결 재 문 서 공 개	● 공개 여부를 “비공개”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~제8호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
#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

'17.1.19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확대 및 사례금 조정 등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임.

## I 지침개요

### 제정배경

-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」 일부개정규칙안 공포·시행('17.1.19)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.

### 적용대상 : 서울시 소속 공무원과 시에 파견된 공무원

### 제정근거 :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」 제18조제2항

- 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세부운영 사항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이 정함.

### 시 행 일 : 2017.1.19.

## II 외부강의등 관련 개정개요

### 개정목적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<sup>1)</sup>가 요청하는 외부강의등도 신고하도록 하여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최대한 전념하도록 하고,
- 외부강의등의 신고절차 및 사례금 상한액은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적용 필요

1) 헌법기관,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, 시도교육청 등

## □ 주요 개정내용

현행	개정
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(그 소속기관을 포함)일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	·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(소속기관 포함)일 경우에도 신고대상
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대상	· 대가의 수령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 ※ '기고'도 신고대상에 포함
강의개시 3일전까지 서면신고	·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서면신고, ·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,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서면신고
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적정여부 검토 가능	·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제한 가능
초과사례금 수령 금지	· 초과사례금 수령시 행동강령총책임관 등에게 신고하고,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

▶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개정

### 〈최근 5년간 외부강의등 신고현황〉

(단위 : 건)

'16년	'15년	'14년	'13년	'12년
1,545	728	768	701	595

▶ '16년 신고현황 급증(15년 대비 1.5배) 사유

- '16.9.28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위반행위 방지 등을 위해 '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요청의 외부강의등'도 신고토록 유도

## □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, 신고대상 여부 판단기준

⇒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닐 경우, '신고대상'임을 주의

강의 유형	신고대상 여부
· 학교, 인재개발원, 교육연수원 등 교육기관에 출강, 발표, 토론 등	· <u>신고대상</u> *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'신고대상 제외'
· 법령(조례, 규칙 포함)에서 정한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사, 자문, 의결, 평가 등	· 신고대상 제외 · 그 밖의 위원회 참석의 경우, <u>신고대상</u> * 사전 비밀유지, 보안을 요하는 위원회 참석의 경우 '사후신고'가능
· 시정홍보 등을 위해 내부방침을 받은 공청회, 간담회, 주민설명회, 연구모임	· '신고대상 제외'
· 간행물 저술, 기고, 검수 등	· '신고대상 제외'

### Ⅲ

## 외부강의등 세부처리 절차

### □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초과사례금 신고·처리절차

#### ○ 사전신고 절차 (제18조제1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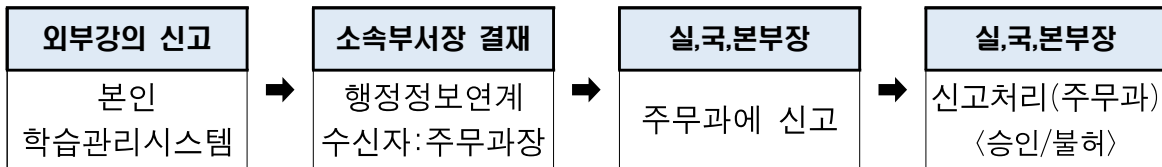
- 외부강의등<sup>2)</sup>을 할 때에는 횟수·시간 및 대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매 강의 개시 3일 전까지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서면으로 신고
-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신고 대상

- 4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
- 3급 이상 공무원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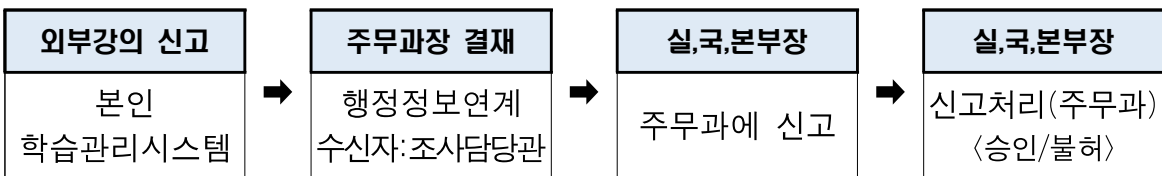
#### 〈신고방법 및 절차〉

☞ 행정포털內 ‘학습관리시스템’ → ‘외부강의 사전신고’코너를 통해 사전신고, 4급 이하는 ‘소속부서장’에게 신고·처리, 3급 이상은 ‘조사담당관’에 신고·처리

#### ■ 4급 이하 ⇒ 실,국,본부 처리



#### ■ 3급 이상 ⇒ 감사위원회(조사담당관) 처리



#### 〈 외부강의등 서면신고시 필수 신고사항 〉

- 신고자의 성명, 소속, 직급 및 연락처, 외부강의등의 유형, 일시, 강의시간 및 장소
- 외부강의등의 주제
-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(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미기재)
- 요청자(요청기관) 및 요청사유, 담당자 및 연락처

※ 필수 신고사항 중 일부 누락 신고시, 신고요건 불비로 ‘불허’가능

2) 강의·강연·토론·기고 또는 세미나·공청회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·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

○ 사전신고 유의사항

-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등 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도 사전에 신고대상
- ▶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위반한 경우 '견책이상' 징계대상
-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
- 사전신고 시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
-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의 제한 가능

○ 초과사례금 신고 및 처리절차 (제18조제7항)

-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을 받을 경우 기준 초과 수령 금지

<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」 사례금 상한액 (제18조 관련) >

(단위:천원/ 1시간)

공무원	시장	부시장	4급이상	5급이하
1시간 상한액	50만원	40만원	30만원	20만원
1시간 초과 상한액	75만원	60만원	45만원	30만원

- ▶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,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하고,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
- ▶ 상한액에는 강의료, 원고료,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
- ※ 소속기관에서 교통비, 숙박비,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,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미포함 (별도 지급 가능)
- ▶ 국제기구, 외국정부, 외국대학, 외국연구기관, 외국학술단체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름

-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2일 이내에 이를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<sup>3)</sup>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해야 할 의무 발생

**〈 초과사례금 서면 신고사항 〉**

- 사전 신고 사항
- 초과사례금의 액수,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

-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은 7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신고자에게 통지
-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즉시 초과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(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을 이미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)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통보

☞ 참고사항 : ‘청탁금지법’상 외부강의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

구 분	외부강의등	초과사례금	
공직자의 의무	사전 신고의무	신고의무	반환의무
위반 시 제재	징계	징계	징계
		500만원 이하 과태료	

## IV      **향후계획**

### 외부강의등 업무처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강화

- 과도한 횡수의 외부강의등과 초과 사례금 수수는 공직자 청렴에 대한 시민의 신뢰 저해 요인으로 작용되므로 부조리 요소 사전제거 필요
  - 당초 : 반기별 점검 (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시) ⇒
  - 변경 :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준수의 공직문화 정착시까지 수시 점검

3)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·상담,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·신청의 접수·처리 및 내용의 조사, 위반행위에 대해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감사위원회, 소방재난본부, 상수도사업본부, 시의회, 시립대학교, 공직유관단체에 각각 지정

**Q. 휴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?**

- ☞ 휴직자의 경우도 사전신고 후 외부강의등을 해야 하며,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함

**Q. 외부강의등의 횟수와 시간 제한은 없는지?**

- ☞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함

**Q.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?**

- ☞ 근무시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임

**Q.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?**

- ☞ 사례금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함

**Q.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?**

- ☞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 
다만, 신고대상이 아니더라도 공직자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외부강의등은 소속기관장 등의 판단에 따라 제한 가능

**Q. 연구기관에 자문하는 경우가 많은데, 이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?**

- ☞ 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,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은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므로 신고해야 함

**Q.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·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는지?**

- ☞ 연주회·전시회에서의 연주·공연·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, 의견·지식을 전달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



**Q. 공직자가 행사비를 받고 축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?**

☞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·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

**Q. 공청회,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?**

☞ 공청회,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·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·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

**Q. 법령(조례·규칙을 포함)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외부 강의등에 해당하는지?**

☞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·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

**Q. 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 또는 면접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를 하거나 면접을 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?**

☞ 시험출제 또는 면접은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행위로서,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·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·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

**Q.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?**

☞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·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

**Q. 방송사가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문화재 전문가인 교수에게 원고를 써달라고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등인지?**

☞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관련 원고작성은 신문·잡지 등에 실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

**Q.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?**

- ☞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청탁금지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제8조의 특별규정이며,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
다만,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

**Q. 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에게 식비, 숙박비,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 외부 강의등 사례금에 포함하는지?**

- ☞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, 숙박비,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,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 되지 않음

**Q.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내용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사상·신념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프라이버시권,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?**

- ☞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
외부강의등 사전신고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를 차단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움

**Q. 공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은?**

- ☞ 공직자의 외부강의등이 시민과의 소통, 시책의 홍보, 전문지식 활용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, 외부강의등을 매개로 한 직무관련자로부터 고액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는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민관 유착 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으며, 과도한 횡수의 외부강의등은 공직자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등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